

묵 제 학 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정직, 근면, 봉사, 창조의 건학정신으로 중등보통교육 및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묵제학원(默齊學園)(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학산중학교(鶴山中學校)
2. 학산고등학교(鶴山高等學校)

제4조(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정읍시 상동 84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변경된 사항은 14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어 도교육감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도교육감에게 보고 한다..

(개정07.12.05, 2010.1.26., 2012. 8. 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이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9조의2(회계의 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포함)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각각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삭 제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개정 2007.12.05)
2. 감사 3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7.12.05)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05)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05)

④(삭제 2007.12.05)

제20조의4(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학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05)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개정 2007.12.05)

③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학산고등학교 2명,

학산중학교 1명으로 한다.(개정 2007.12.05)

④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07.12.05)

⑤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05)

제20조5(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7.12.05)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개정 2007.12.05)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되, 추천인원은 단수로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12.05)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와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시설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인원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 8. 1)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회의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회의록) ①이사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 서명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05)

④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7.12.05)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영농사업 및 특용작물 재배
2. 현금 정기 예금
3. 건물 임대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 사업을 하기위하여 별지 토지 목록과 같은 영농사업 및 현금 정기 예금 수입과 건물임대료 수입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의 수익사업체 사무소는 정읍시 상동 84번지에 둔다.

제35조(관 리 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매 산

제36조(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26)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교육사업을 경영하는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0.1.26)

제38조(청 산 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26)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임 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1.26)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계약제교원의 모든 임면 권한은 각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03.01.)

③제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07.12.05)

1.배우자

2.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⑤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

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09.09.)

⑥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임용을 제한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재직 교원도 당연 면직한다.(개정 2012. 8. 1)

제39조의2(기간제 교원) ①교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의3(삭제)

제39조의4(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4.20), (개정 2016.09.0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2. 8. 1)(개정 2016.09.09.)

-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개정 2016.09.09.)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0.1.26)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2016.09.09.)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신설 2016.09.09.)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9.09.)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6.09.09.)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6.09.09.)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 할수 없다.
10. 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11. 제40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09.09.)

12. 제40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6.09.09.)

제42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교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2. 8. 1)

제43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9.09.)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일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수 있다.

제45조(보 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08.29.)

제45조2(사학윤리강령 및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

①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서 모든 교직원은 사학윤리강령과 전라북도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신설 2012. 8. 1)

제46조1(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2(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교원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단 학교장은 임기전이라도 교원정년일에 당연퇴직 한다.)

제46조의3(명예퇴직수당) ①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써 20년이상 근속한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7조(후임자 보충 발령에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

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2.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 및 공개전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6.30)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자가 아닐 것

④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및 일부개정 2016.09.09.)

제56조의 2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6조 4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6.09.09.)

제57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

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선)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 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6.09.09.)

제63조(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교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65조 내지 제78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79조(자 격)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1.04.23.)

② 일반직원이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0조(임 용)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신규임용의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타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개정 2021.04.23.)

제81조(복 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23.)

제81조1(정 년)

①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을 따른다.

②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개정 2021.04.23.)

제81조2(대우일반직원의 선발)

대우일반직원의 선발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개정 2021.04.23.)

제81조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관할청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81조의4(특별승진) ① 정관 제81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는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26.),
(개정 2021.04.23.)

제82조(보 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1.04.23.)

제83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23.)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1(근속승진)

① 임용권자는 학교 소속 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 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 한다.(개정 2021.04.23.)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86조(교장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87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 학 교

제88조(교장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89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정 원

제90조(정 원)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하며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04.23.), (개정 2022.03.01.)

제 8 장 보 직

제91조(공 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 신문에 공고 한다.

제9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유 귀 녀	38. 9. 15.	4 년	정읍시 상동 84번지
이사	유 종 안	12. 8. 10.	4 년	정읍시 부전동 108번지
이사	김 용 생	29. 9. 21.	4 년	정읍시 부전동 577번지
이사	김 용 대	35. 8. 1.	4 년	정읍시 상동 84번지
이사	송 연 수	41. 9. 19.	2 년	정읍시 덕천면 신월 390번지
이사	손 태 규	35. 12. 6.	2 년	정읍시 수성동 306번지
이사	소 금 남	33. 5. 18.	2 년	정읍시 장명동 164-9번지
감사	신 갑 철	20. 3. 8.	2 년	이리 평화동 17번지
감사	이 광 식	36. 4. 9.	1 년	정읍시 시기동 406번지

제 9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94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5조(위원의 선출등)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26)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12. 8. 1, 2016. 1.26)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8. 1)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6. 1.26)

⑧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신설 2016. 6.30)

제96조(위원의 임기)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개정 2003.10.10, 2012. 8. 1, 2016. 1.26, 2016. 6.30))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신설 2016. 6.30)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에 시작한다.(개정 2016. 1.26)

제97조(위원의 자격) ①삭제(2003.10.10)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8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6. 1.26)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8. 1)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6)

제99조(위원의 당연퇴직)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과 전학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5. 제98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6.30)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100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9. 교복·체육복·졸업앨범·현장체험학습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씨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개정 2016. 1.26)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3. 학교법인 개방형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4.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제1항제9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신설 2012. 8. 1)

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8. 1)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신설 2012. 8. 1)

제10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자문·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 1.26)

제101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정읍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조신설 2016. 6.30)

제3절 운영경비등

제102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4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

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전북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7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8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0조(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

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2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3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4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정관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2006.01.24.행정과-945)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5.교육지원과-5053)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정관 시행일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2007.12.05.교육지원과-12870)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지원과-996, 2010.1.26)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 8. 1.예산과-6665)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6.교원인사과-2527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 1.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7.교원인사과-13075)
(2016.6.21.교원인사과-1329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 6.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6.교원인사과-1474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 9.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 8.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2.23. 예산과-244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 4.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16. 예산과-21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 3.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총	계	3명
일	반 직 계	3명
6	급 (주 사)	1명
8	급 (서 기)	1명
9	급 (부 서 기)	1명

(별표 2)

학산중학교 사무직원 정원

구분 (중 학교)	직종	일반직										
	직군	행정					기술	계				
	직렬	교육행정					시설 관리					
	직급	5급	6급	7급	8급	8급	5급	6급	7급	8급	계	
3학급 이하				1		1			1	1	2	
4~5학급				1	1	1			1	2	3	
6학급		1			1	1		1		2	3	
7~9학급		1	1			1		1	1	1	3	
10~12학급		1	1	1	1	1		1	1	2	4	
13~24학급		1	1	2	1	1		1	1	3	5	
25학급 이상		1	2	1	2	2		1	2	3	6	

학산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구분 (고등학 교)	직종	일반직										
	직군	행정					기술	계				
	직렬	교육행정					시설 관리					
	직급	5급	6급	7급	8급	8급	5급	6급	7급	8급	계	
5학급 이하				1	1	1			1	2	3	
6~8학급		1			1	1		1		2	3	
9학급		1	1	1	1	1		1	1	2	4	
10~23학급		1	1	1	2	2		1	1	3	5	
24학급	1	1	1	1	2	2	1	1	1	3	6	
25학급 이상	1	1	2	1	2	2	1	1	2	3	7	

(별 지)

목제 학원 수익용재산(기본재산) 목록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용도	평가액	비고
정읍시 상동	846	답	903	수익용재산	68,058,000	
현 금	대한투지신탁전주지점			"	92,923,600	
	정읍중앙새마을금고			"	61,000,000	
합 계					221,981,600	